

유지관리교육비(제21조 관련)

납부자	납부 금액
1.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규교육을 받으려는 사람	15만5천원
2.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	15만5천원

비고

교육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.

1.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: 과오납된 금액의 전부
2. 교육 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: 납입된 교육비의 전부
3. 교육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: 납입된 교육비의 전부
4. 교육 실시일 2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: 납입된 교육비의 전부
5. 교육 실시일 1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: 납입된 교육비의 100분의 50